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

1. 배정 기준

- 가. 배정방법 : 신청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 기준)를 기초로 아래 '배점표'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
- 나. 배정대상 :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배정
- ※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수시 배정
- 다. 배정 우선순위(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
- 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 동(洞) 내 거주하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 상이 국가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 2순위 :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이하 '관내')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관내 전입일이 이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 이 적은 자동차
 - 3순위 :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관내 사업자·재직자) 중 고득점 순
 -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 시기)이 이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

<표 1> 배점표

항목							점수	확인방법	
거주자	① 거주자 거주기간(관내 최초 전입일 기준) 점수							20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관내 최초 전입일)
	거주 기간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점수	3	5	7	10	13	15	20	
	② 거리 점수(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15 이하	공단 관리 프로그램
거리	10m 미만	10m ~30m 미만	30m ~50m 미만	50m ~100m 미만	100m 이상				
점수	15	10	7	3	0				
차종별 (공통)	①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	자동차등록증
	② 소형차(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2	
특별 가점 (공통)	①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							10	증명서 등 입증 자료
	②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도장애 및 중도장애) 자동차							5	
	③ 기타 장애인(4~6급, 시각장애 5.6급)용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의 자동차								
우대 가점 (공통)	친환경 자동차 (최대 5점)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1등급 자동차 (환경부 배출가스 조화내역 제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5	환경부 배출가스 조화내역 제출	
		저공해 등록 자동차(등록증상 '저공해' '하이브리드' 표시) 친환경 1등급 차량의 경우 저공해 등록 자동차 3점 중복점수 미인정					3	자동차등록증	
	다용카드 소지자 자동차 (단 13세 이하 자녀 한정)					2자녀	3	주민등록표등본/ 다용카드	
						3자녀 이상	5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단,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							5	자동차등록증
	비 거주자	① 관내 사업 기간(재직자는 재직기간) 점수							20 이하
사업 기간 (재직기간)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3	5	7	10	13	15	20	
※ 사업자는 관내 사업 개설일(재직자는 해당 업체 재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내 사업 개설일 이전 입사자는 관내 사업 개설일부터 기간을 가산함.							15 이하	공단 관리 프로그램	
② 거리 점수(사업장 소재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거리	10m 미만	10m ~30m 미만	30m ~50m 미만	50m ~100m 미만	100m 이상				
점수	15	10	7	3	0				

※ 비교

- 장애인 특별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물론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단, 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복 부여하지 않음)
-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
-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우선배정 제외 대상

- 가.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 나. 동일 주소지(신청인)의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 이상에 중복 배정하지 않음. ※ 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공단이 배정 취소 등 임의 처리하며 동일 주소지(신청인)로 2차량 이상 신청하면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우선배정에서 제외함.
- 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자동차
- 라. 불법 주차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마.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바. 우선배정 제외 대상자라도 배정 후 여유분 발생 시 '가'와 '나' 목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단, 민원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3. 배정(지정) 원칙

가.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구간 공동 이용제)로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단, 분납 신청 시 3개월 단위 분납 가능)

나.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또는 대기자)에게 배정함.

※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

다.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부부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단,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

라.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재직 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마.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개인택시, 2.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

바.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하거나 취소함(단, 타구간 여유분 발생으로 수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

① 해당 구간 배정일이 늦은 자 ②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

사.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해야 함.

아.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

자.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차. 배정 후 차량 변경시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단, 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이용가능]

카. 배정은 1가구 1차량(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

타.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을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 7월 9일이 시행일이면, 7월 8일 할인적용/7월 9일 할인 미적용)

4. 배정 취소 요건(우리공단 직권 취소)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다.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 이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마.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가. 주차권 미부착 시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견인)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다.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라.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마.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바.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아.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6. 주차요금 기준(월정)

구분	전 일 (24시간)	주 간 (09시~18시)	야 간 (19시~익일08시)	비 고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주차장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 02-300-5042~5045, FAX: 02-376-4068)